

【 12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5.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99.2.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해 오던 청결·유지 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 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 법령과 중복 또는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필요 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청결 유지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 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 마.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8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청결유지등)① 군수는 관할구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삭제)
<p>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②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p> <p>③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승인 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p>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군수는 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삭제)
<p>제13조(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 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삭제)
<p>제18조(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삭제)

第3章 廢棄物管理

● 廢棄物管理法

소관부처 : 환경부

全文改正	1991 · 3 · 8	法律第4363號
改正	1992 · 12 · 8	法律第4539號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4 · 1 · 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5 · 8 · 4	法律第4970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或名稱등의 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8 · 2 · 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2 · 12 · 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 · 8 · 4)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 · 燃燒滓 · 汚泥 · 廢油 · 廢酸 · 廢 알카리 · 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의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 ·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騷音 · 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 · 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 · 廢酸 등 周邊環境을 污染시킬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燃却 · 中和 · 破碎 · 固形化 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 · 海域排出 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生處理”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로서 廢棄物을 再利用 · 再生利用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5·8·4)

第6條 (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7條에 規定된 地域 또는 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者는 당해 地域 또는 施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文化遺跡地·公園·廣場·野營場·海水浴場·道路·港灣·漁港·下水道·河川·湖沼·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施設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8條 (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은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 國家의 廉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注 92)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여야 한다. <改正 95·8·4>

② 및 ③削除 <95·8·4>

④事業場廢棄物 중 指定廢棄物을 運搬·처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⑤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5·8·4>

⑥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8·4, 97·12·13 法5454>

第3章 廢棄物處理業等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著(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著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廢棄物處理業의 著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再生處理業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第40條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教育) ①廢棄物處理業 · 廢棄物處理施設設計 · 施工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 당해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41條 (帳簿의 記錄 · 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을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 · 運搬 · 處理狀況등(第7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 · 容器등의 生產 · 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改正 92·12·8, 95·8·4, 97·12·13 法5454>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 · 관리하는 者
3. 내지 5. 刪除 <95·8·4>
6.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7.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42條 (休業 · 廢業등의 申告)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 · 施工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 · 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第43條 (보고 · 檢查등) ①環境部長官, 市 · 道知事 또는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 · 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 檢查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補 則

(총 93)

第61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5·8·4>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브관한 者
2. 내지 4. 刪除 <95·8·4>
5. 第26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30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 6의2. 第30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
理한 者
8. 第24條第 2 項·第25條第 4 項 또는 第44條의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및 10. 刪除 <95·8·4>
11. 刪除 <92·12·8>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
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4. 및 15. 刪除 <95·8·4>

第62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
다. <新設 95·8·4>

1. 第24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 3 項 또는 第44條의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
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使用制限命令을 위반한 者
-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주 66)

행정진행률등록번호
32000-12130-17-9905

98 제·개정

환경법령해설집

1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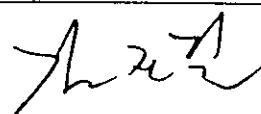
מִתְּבָא
מִתְּבָא
מִתְּבָא
מִתְּבָא

現 行	改 正
<p>物保管施設 또는 空器를 設置하 게 할 수 있다.</p> <p>② 市長·部長·區長은 事業場 廢物排出者が 設置하는 管制 設 또는 管制가 第1項의 要件에 의하 領域에 부적합하다고 이전 되는 데에는 環境部술이 전하여 부록 제1호 規則을 첨하여 관리 한廢物排出者에게 고지·관 체 기간 내로 하를 둘 수 있다.</p> <p>第24條(事業場廢棄物排出者の 管 務등) ① (現行과 같음)</p> <p>② 環境部술이 전하는 事業場廢 棄物排出자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 등을 環境部술이 전하는 바에 따라 市長·部長·區 長에게 告知하는 바다.</p> <p>同一事項을 環境部술이 전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物保管施設 또는 空器를 設置하 게 할 수 있다.</p> <p>② 環境部술이 전하는 事業場廢 棄物排出자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 등을 環境部술이 전하는 바에 따라 市長·部長·區 長에게 告知하는 바다.</p> <p>同一事項을 環境部술이 전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 호

1999년 4월 26일 (월)

차 레

규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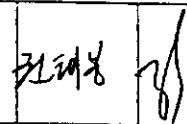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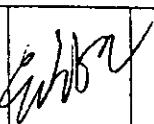
양주군 규칙	제 1094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
양주군 규칙	제 1095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4

고 시

양주군 고시	제 1999-31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11
양주군 고시	제 1999-32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12

공 고

양주군 공고	제 1999-138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5
양주군 공고	제 1999-144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
양주군 공고	제 1999-145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47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증조례(안)입법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67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18

회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35 호

공 고

양주군 공고 제1999-138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서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재치, 콘크리트 타설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함.
 -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청소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하는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 FRP 등의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 마.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축산폐수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규정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현장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함.
 - 사. 동법를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기준을 1차에서 3차시까지 세부기준을 정하여 위반 횟수별로 부과하는 환경부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 아.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영업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하여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의 규제완화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4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정부의 규제경비 계획에 따라 '99. 2. 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해 오던 청결·유지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법령과 중복 또는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수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계도하고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중복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나.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시에는 설치승인 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폐지에 따라 법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다.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동법에 근거없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허가조건 준수여부,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없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폐기물처리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사항으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51-820-2250-225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5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자합.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및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
 -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
 - 2)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3항(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폐지에 따라 "별표1의" 5호의 법제 24조 제3항은 폐지함.
 - 3)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여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가 1차에서 3차까지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인 것을 위반회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0-2251)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7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양 주 군 보

제 135 호

1. 조례제명 :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는 세부설치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나. 공중화장실을 1일 3회이상 청소·소독·악취의 발산과 과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는 세부 유지·관리기준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다.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유지하거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개선·청결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라.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료화장실 승인 규정과 유료화장실을 승인받은 자의 준수사항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67호

1. 의정부시 고시 제1996-34호(96. 6. 17)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종 도로(종로 1-9호선)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을 변경코자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군청 도시과, 장흥면사무소와 경기도북부출장소(도로교통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주소, 성명, 단체명, 의견내용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 가. 공람 기간 : '99. 4. - '99. 5.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나. 공람 장소
양주군청 도시과(0351-820-2351-2) 및 장흥면 사무소(0351-820-2671) 경기도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0351-870-2626)
- 다. 변경 사유
-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문개정 '98. 3.16]
조례 제 1664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를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보관·수집하여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으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석,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청결유지등) ①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주군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 6 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지정) 군수는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이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m^3 이상)을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용쓰레기용기 설치승인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청소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량
- 나. 계약기간
- 다. 계약금액
- 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 마.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법·령·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군수는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리 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 3 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업무위탁등)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3.16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

□ 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99.2.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해 오던 청결·유지 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법령과 충복 또는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청결 유지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 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 마.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 예고결과

- 1999. 4. 20 - 1999. 5. 1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